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Light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 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종신	5년납	만 15세 ~ 59세	월납
	10년납	만 15세 ~ 59세	
	15년납	만 15세 ~ 55세	
	20년납	만 15세 ~ 50세	
	55세납	만 15세 ~ 50세	
	60세납	만 15세 ~ 55세	
	65세납	만 15세 ~ 59세	
	70세납	만 15세 ~ 59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의 영업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가입금액 기준)	할인금액
1억원 미만 (다만, 9,6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없음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영업보험료의 3.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영업보험료의 4.0%
3억원 이상	영업보험료의 5.0%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나. ‘가’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표준이율로 부리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 대체한다.

다.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표준이율로 부리된 금액을 납입보험료에 가산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90% ~ 110%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end{aligned}$$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beta 1$), 회사채 가중치($\beta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 |
|--|
|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 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 %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마.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

회사는 장래 공시이율 하락시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이란 장래 공시이율 하락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준비금

회사는 장래 공시이율 하락시 최저해지환급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다. 다만,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이란 장래 공시이율 하락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책임준비금 보다 낮더라도 해지환급금 지급시에는 예정책임준비금을 최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타

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다.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